

소방합동조사단 편성 기준(제2조제6항 관련)

| 사고유형              | 피해규모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주관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인명피해(명 이상) |    | 재산피해<br>(억 원 이상)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사망         | 중상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화재사고              | 10         | 20 | 50               | 119대응국 |
| 구조·구급<br>관련 사고    | 5          | 10 | -                | 119대응국 |
| 소방시설<br>관련 사고     | 2          | 5  | -                | 화재예방국  |
| 소방장비<br>관련 사고     | 3          | 5  | -                | 장비기술국  |
| 소방공무원<br>순직 및 중상자 | 1          | 2  |                  | 기획조정관  |

※ 운영방법

1. 위 표의 사고유형별 피해규모에서 인명피해(사망), 인명피해(중상) 또는 재산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여부 및 주관부서 선정 등을 소방청장이 결정한다.
  - ①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
  - ② 사고유형이 복합적인 경우
3. 사고의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총괄, 대응분야, 예방분야, 상황분야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4.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단원은 조사활동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.
5.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단 등을 편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.